



# 소방기본법

[시행 2022. 1. 20.] [법률 제18493호, 2021. 10. 19., 일부개정]

- 소방청 (대응총괄과-총괄,소방활동,소방력동원) 044-205-7562,7572
- 소방청 (119종합상황실-119종합상황실운영) 044-205-7082
- 소방청 (기획재정담당관-국고보조) 044-205-7217
- 소방청 (혁신행정법무담당관-소방기관설치) 044-205-7247
- 소방청 (보건안전담당관-손실보상) 044-205-7412
- 소방청 (화재대응조사과-소방용수,화재조사,의용소방대) 044-205-7472,7476,7480
- 소방청 (구조과-생활안전활동) 044-205-7617
- 소방청 (화재예방총괄과-예방, 화재경계지구, 특수가연물, 소방안전원) 044-205-7442
- 소방청 (생활안전과-소방교육·훈련,소방박물관,소방안전교육사) 044-205-7666,7670,7667
- 소방청 (소방산업과-소방산업육성) 044-205-7502

**제16조(소방활동)**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·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(이하 이 조에서 "소방활동"이라 한다)을 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1. 1. 5.>

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21. 1. 5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**제21조의2(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)** ①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(이하 "전용구역"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·방법,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2. 9.]

부칙 <제15365호,2018. 2. 9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)** 제21조의2,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